

	앵커 사업단 운영규정 [제목개정 2026. 9. 1.]	제 정 일	2025. 5. 1.
		개 정 일	2026. 9. 1.
		개정차수	1차
		담당부서	앵커 사업단

제 1 장 총 칙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(앵커)(이하 ‘앵커 사업’이라 한다.) 사업의 성공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앵커 사업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6. 9. 1.)

제 2조 (사업) 앵커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앵커 사업 운영계획 수립
2. 앵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 및 조정
3. 앵커 사업의 실적 및 성과지표 관리 감독
4. 앵커 사업의 예산배분 및 집행관리
5.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

[전문개정 2026. 9. 1.]

제 2 장 조 칙

제 3조 (조직 및 임명) ① 앵커 사업단은 총장 직속기구로 한다.

② 앵커 사업단의 단장은 교무위원 또는 교무위원급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26. 9. 1.]

제 4조 (사업전담조직) 앵커 사업단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담 교직원을 둘 수 있으며, 이들에게 앵커 사업단의 업무와 이와 관련된 우리 대학의 기업 협업·지역혁신·교육 연구업무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. (개정 2026. 9. 1.)

제 3 장 위원회

제 5조 (앵커 위원회) ① 앵커 사업단의 주요 추진 사항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앵커 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며, 앵커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본 사업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변동으로 인한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④ 앵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앵커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
2. 앵커 사업비 운영 집행기준 및 예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
3. 앵커 사업 관련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4. 지산학연 협력을 위한 행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
5. 기타 위 각 호와 관련한 사항

[전문개정 2026. 9. 1.]

제 6조 (자체평가위원회) ① 앵커 사업 추진과 운영의 객관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속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‘평가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 (개정 2026. 9. 1.)

② 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며,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본 사업기간 내로 하고, 위원의 변동으로 인한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앵커 사업의 성과 평가 및 심의 (개정 2026. 9. 1.)
2. 앵커 사업의 성과에 대한 개선방안 및 환류사항 (개정 2026. 9. 1.)
3. 기타 사업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

제 7조 (소집 및 의결) 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8조 (기타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관련 법규 및 지침과 본 대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